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 자살예방교육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작성 자	이름	박예운
	담당부서 (과)	자살예방정책과		직급	행정주사보
	국장	이형훈		연락처	044-202-3894
	과장	김우기		이메일	yy1029@korea.kr

2024. 03. 13. 작성

정신건강정책관

이형훈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자살예방교육 강화											
	2.규제조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제10조의5											
	3.위임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4.03.20~2024.04.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국가기관·공공기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자살예방법」 개정(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 ○ (정부개입 필요성) 자살예방법 개정 내용에 따라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기관, 교육의 방법 및 내용, 결과제출 방법 등을 구체화 하는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필요											
	7.규제내용	－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기관, 노력 실시기관 규정(안 제10조) － 교육 내용을 인식개선/생명지킴이 교육으로 명확화(안 제10조의2 신설) － 자살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10조의3 신설) － 교육 방법 및 우수기관 인센티브 규정(안 제10조의4 신설) － 1월 31일까지 교육결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의무 교육 기관(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 병원급 의료기관)</td><td>약 94,942개 기관</td></tr><tr><td>피규제자</td><td>노력 대상 기관(대학,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대안교육기관)</td><td>약 44,386개 기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의무 교육 기관(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 병원급 의료기관)	약 94,942개 기관	피규제자	노력 대상 기관(대학,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약 44,386개 기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의무 교육 기관(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 병원급 의료기관)	약 94,942개 기관											
피규제자	노력 대상 기관(대학,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약 44,386개 기관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설정		제16조		신규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재검토행		2025.01.01~2027.12.31		3년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기관)	제10조(자살예방 교육 실시기관) ①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이란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1. ~ 4. (생 략)	2.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교육기관
<신 설>	④ 법 제17조제4항제5호----- ----- -----.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자살예방 교육내용)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	개정안
	1. <u>자살예방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u> 가. <u>생명의 소중함과 가치</u> 나. <u>자기이해와 돌봄, 도움요청에 관한 내용</u> 다. <u>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내용</u> 2. <u>법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생명지킴이 교육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u> 가. <u>자살문제와 현황</u> 나. <u>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u> 다. <u>자살위기 대응 기술</u> 라. <u>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u> <u>제10조의3(자살예방 교육 실시 횟수)</u> <u>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은 제10조의2에서 정한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살 예방교육은 각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u> <u>제10조의4(자살예방 상담·교육 방법)</u> <u>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과 법 제 17조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은 개별면담,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강의</u>

현 행	개 정 안
	<u>등으로 실시 할 수 있다.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자살예방교육 우수 기관·단체·시설은 다음 연도의 교육을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u> 제10조의5(자살예방 교육 결과제출) <u>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자살예방교육에 한하여 결과를 생략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교육결과를 제출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u> 부 칙 이 영은 2024. 7. 12.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국가·공공기관·초·중·고등학교 등에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자살 예방법」 개정(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

< 참고 1 : 자살예방법 개정 주요 내용 >

- (법 제17조제1항 ; 자살예방 교육 의무 실시) **현행** 교육 노력대상(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초·중·고등학교, 노인복지·사회복지시설)을 **의무 대상**으로 **강화** 및 **결과 보고**
- (법 제17조제6항 ; 시행 방법 위임) 교육 방법·내용, 실시 횟수, 결과 제출 절차 등 교육 의무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교육 대상 기관, 교육 방법·내용, 결과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필요

< 참고 2 :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 (안 제10조제2항 ; 의무 실시 기관) **현** 시행령상 교육 노력대상인 30인 이상 사업장,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무 실시 대상으로 강화
- (안 제10조제3항 ; 노력 대상 기관) 교육 의무 부과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영세한 사업장(30인 미만), 학교(대안교육기관)를 노력 대상으로 지정
- (안 제10조의2~5) 교육 내용·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절차 등 교육 의무화에 필요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규정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
	내용	자살예방교육 노력 대상 기관만 규정
규제대안1	대안명	자살예방교육 대상 기관 명확화 및 운영 세부기준 마련
	내용	자살예방교육 의무/노력 실시 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교육 내용,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에 대해 정함 -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기관, 노력 실시기관 규정(안 제10조) - 교육 내용을 인식개선/생명지킴이 교육으로 명확화(안 제10조의2 신설) - 자살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10조의3 신설) - 교육 방법 및 우수기관 인센티브 규정(안 제10조의4 신설) - 1월 31일까지 교육결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해당없음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육 대상기관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규제대안1	자살예방교육 의무 시행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세부사항 마련을 통해 의무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함	해당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국가교육위원회	2024.1.9., 정부 서울청사, 대면	자살예방교육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통합 실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입법예고안에 반영
광역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2024.2.21.,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대면	차질없는 교육을 위해 충분한 자살예방강사 양성 필요	자살예방강사 양성 및 관리 중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규제대안1) 동 규제를 통해 자살예방 교육 의무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관 교육 담당자 및 대상 기관에 더 큰 혼란과 부담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입법 목적과 취지의 달성도 어려움
 - 규제 대상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살예방교육을 통한 생명 존중문화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임

3. 규제목표

-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 및 운영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육의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전 사회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통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자살률 감소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의무교육을 통한 자살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대상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음
 - 자살예방법에서 노력 대상 기관을 의무 실시 기관으로 상향하였으므로, 입법취지에 따라 현 시행령상 노력 대상 기관을 의무 실시 기관으로 정비
 - 영세한 사업장(상시근로자 30인 미만)과 대안교육기관은 자율성을 고려하여 노력 대상으로 규정함
- 교육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배포하며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별도 비용 없이 교육 이수 가능하므로 필요 최소한의 규제임
 - 특히, 학생 자살예방교육은 교육과정과 연계·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 제출 또한 생략할 수 있음
 - 자살예방교육 강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전국적으로 양성하여 대면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대상 기관은 교육을 연 1회 이수하며, 교육 우수 기관은 다음 연도의 교육을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간소화 가능
 - 교육 미이행시 과태료·점검결과 언론공표 등 법적 제재 규정 없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본 시행령의 개정사항은 '자살예방 교육 강화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이 목적이며 제조 등의 기술 통제와는 관련 없음

- 경쟁영향평가

본 시행령의 개정사항은 종전사업자와 신규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 받게 되며, 사업자 간 차별성은 없기 때문에 경쟁에 의한 영향은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규제는 중소기업과 무관하므로 중기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 없음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게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

-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연 1회 실시, 우수기관 인센티브 등 의무 대상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의무 부과 기준이 기업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3년마다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지 재검토

※ 교육의무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야 함 (규제개혁위원회, '24.1.26.)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 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국가	주요 내용	프로그램 명
영국	-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대면) 실시	Relationships, health and sex education(RSHE): Physical health and mental wellbeing
미국(뉴저지)	- 초·중·고등 교과 과정 내 학생 대상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Comprehensive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미국(뉴욕)	- 직장인 대상 의무 교육 실시	NYS Employee Suicide Prevention Training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	—

○ 타법사례

- (장애인복지법) 대상 기관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참고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요>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교육 주체	복지부, 고용부(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 대상	국가 및 공공기관, 지자체장, 어린이집 및 각급 학교 (초·중·고·대학생 및 교직원), 공공단체, 모든 사업장
교육 시간	매년/1시간 이상
교육 방법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 포함
교육 내용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직장 내 장애인 인권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그 밖에 장애인 인식 개선에 필요한 내용
결과 보고	복지부/고용부 장관에 제출 (증빙자료는 3년간 내부 보관)
미이행 제재	사업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외 기관은 없음 (단, 기관의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공표, 각종 평가에 반영)
교육 관리	- 교안: 부처 제작 표준 교안 배포 - 전문강사: 개발원장·고용공단이 위촉한 강사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의무 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상시근로자 30인 이상)과 의료기관(병원급)이므로 교육을 의무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현 법령상 교육 노력 대상이었기에 완전히 새로운 교육을 처음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준수 가능성 높음
- (노력 기관) 영세한 사업장(상시근로자 30인 미만)과 대안교육기관을 노력 대상으로 하여, 실시 횟수 또는 결과 보고 의무가 없는 매우 제한적 범위의 내용으로 피규제자 준수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교육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배포하고 교육 결과는 '실적 관리 시스템('24년 하반기 개발 예정)'을 통해 보고하므로 현행 조직·인력을 통해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 집행을 위한 별도의 재정 부담 없음

*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시스템 개발·유지보수는 보건복지부 집행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전국민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과제를 담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23.4월, 총리주재)", "정신건강혁신대책(23.12월, V주재)" 발표
- 국가기관·공공기관·각급 학교 등에서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자살예방법 공포(23.7월)
 - 교육 대상 추가 지정,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등 교육 의무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자살예방교육 운영 체계 정비를 위한 "자살예방교육 체계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연구용역 수행(백석대학교, '23.8월~11월)
-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지속(23.12월~)
 - 학생 자살예방교육 관련 국가교육위원회 의견 수렴(23.12월~3월)
 - *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2)

2. 향후 평가계획

- 과태료, 점검 결과 언론공표 등 교육 미이행시 법적 제재 규정 없음
- 자살예방 교육 우수기관 표창,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 집중 대국민 홍보 (공익광고, 유튜브, 지하철·버스 옥외광고 등) 등을 통해 교육 이수 독려
 - 교육 우수기관에게는 다음 해 교육 시 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간소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 시스템 통해 미실시 기관 모니터링 및 교육 이수하도록 독려할 계획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없음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수렴하여 향후 규제 완화-폐지 등 관계법령 개정유무 등을 파악하겠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	—	—	—

4. 종합결론

- 국가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자살예방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은 상위법에서 명시적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입법 목적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비한 것으로서, 교육 대상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4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자살예방교육 대상 기관 명확화 및 운영 세부기준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자살예방교육 대상 명확화 및 운영 세부기준 마련>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자살예방교육 실시 기관
활동제 목	연1회 자살예방 교육 이수
비용항목	교육훈련
비용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0 (0)
근거설명	○ 자살예방교육 실시로 인한 비용은 ①교육 콘텐츠 개발비용, ②교육 실시 기관에서 교육 진행을 위해 지불하는 수강료 등임 ○ 이중 ①콘텐츠 개발은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부담하여 콘텐츠를 개발무상 배포하므로 교육 실시기관의 비용 증가 없음 - 현재 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개발 및 인증한 78종의 교육이 마련되어있으며, 지속적으로 개발·추가될 예정임 - 또한 학생의 자살예방교육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통합하여 실시 가능함 ○ ②교육 수강비용은 교육 방법을 집합교육시청각 교육(집합하여 온라인 콘텐츠 시청)·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 가능하도록 하여 교육 실시 기관의 비용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강의영상 및 교육자료를 일체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 중(24년 중) - 또한 교육 실시 우수기관은 다음 해 교육 시 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도 교육이 가능함(비용 0) ○ 그러므로, 자살예방교육 실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자살예방교육 강화
편익항목	전국민 자살예방 인식개선을 통한 자살사망 감소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국민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이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요청 방법 및 주변의 자살위험 신호를 인지하여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법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음 -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건강하고 탄탄한 생명안전망"이라는 편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므로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가치임 ○ 자살예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편익은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민해볼 수 있음 ① (사회적 가치)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살은 가족이나 친척 외에도 친구, 동료, 선후배, 지인 이웃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인물을 포함해 평균 135명에게 영향을 미침(Cerel et al. 2019). 자살 예방은 사회경제적 가치의 지속적 창출과 가구구성원 등 주변인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② (경제적 가치) 인간의 생명을 경제적 편익으로 추산하는 것은 불가능함. 다만 단순히 1인당 기대소득에 따른 미래소득 감소분을 추정할 시, 1명의 자살사망 예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편익은 4억 900만원으로 추산할 수 있음 * '21년 기준 자살자 1인당 기대소득에 따른 미래소득 감소분 추정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22년 보건사회연구원)